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000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와 학생 및 청소년 운임할인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과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더불어 자치구청장에게 마을버스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자치구청장이 그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한편 서울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배제 근거 등을 명시함으로써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운영 및 건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휴게시간 보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동 조례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함으로써 동 조례 제정 이후 필요한 행정사항을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비 기간도 반영했습니다.

동 조례 제정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의 건전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안전운행 및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